

금융투자회사의 RegTech 도입 확대 필요성과 고려사항*

연구위원 황세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해외의 금융시장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적절한 규제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관리·감독 체계의 확립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시장환경의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금융규제에 대응한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와 내부통제 전략은 효율성과 비용절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중요한 발전방향인 핀테크와 결합하여 RegTech로 진화해가는 추세가 관찰된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RegTech의 도입과 활용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해외 금융회사들은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자동화된 시스템인 RegTech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방향은 국내 금융회사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엄청난 빈도수의 금융거래와 거래관계의 복잡성이 높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특성을 고려할 때 규제준수와 관련된 위험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장기적인 비용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은행권에 비해 금융투자회사들은 상대적으로 RegTech 도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함을 인식하고 경쟁력강화의 일환으로 RegTech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RegTech 솔루션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 금융회사, RegTech 기업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및 호환성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보호에 관한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 범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규정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과 유럽의 금융시장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적절한 규제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관리·감독 체계의 확립에 관한 국제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시장환경의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금융규제에 대응한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와 내부통제 전략은 효율성과 비용절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중요한 발전방향인 핀테크(Fin-tech)와 결합하여 RegTech로 진화해가는 추세가 관찰된다.

RegTech는 규제를 의미하는 Regulation과 기술을 의미하는 Technology의 합성어이다. RegTech분야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해온 영국의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은 RegTech를 금융규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전에 비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에 초점을 맞춘 핀테크의 세부영역으로 정의하고 있다.¹⁾ 국제금융협회(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IIF)가 제시하는 RegTech의 정의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금융규제와 준법감시를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²⁾ 최근에는 기술발전으로 인해 핀테크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RegTech의 개념도 확장되고 있는데, 단순히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에 정보기술(IT)의 적용을 확대한다는 것보다는 정보공유 효율화와 양방향 소통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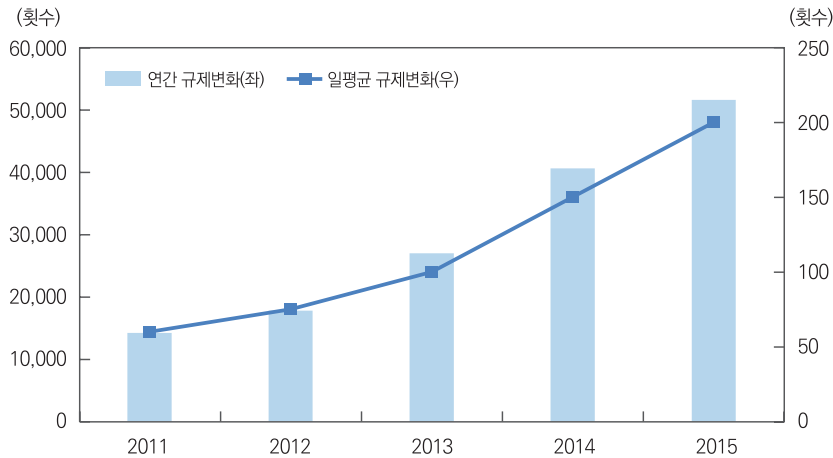
RegTech가 금융규제 및 내부통제의 중요한 발전방향으로 정립되어가는 해외의 트렌트와는 달리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RegTech에 대한 개념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정립된 상황은 아니며, 금융투자회사의 관심도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효율적인 규제준수 및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과 정보공유·보고 체계의 마련은 금융투자회사의 규제불이행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시장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에 본고는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RegTech 도입 확대 필요성을 점검하고, 도입시 검토가 필요한 고려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금융투자회사의 RegTech 도입 확대의 필요성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과 유럽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큰 폭으로 강화해왔다. 규제의 방향성은 크게 투자자보호 강화, 시장투명성의 개선,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통한 시스템 리스크의 통제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런데 규제강화는 필연적으로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규정 사항이 늘어남을 의미한다. 실제로 금융규제 강화가 구체화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규제변화 횟수는 급격히 증가해 왔는데, BCG(Boston Consulting Group)에 따르면 2011년 14,200회 수준이던 글로벌 금융규제 변화 횟수가 2015년에는 51,600회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³⁾

1) Financial Conduct Authority(2015, 2016)
 2)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2016)
 3) Boston Consulting Group(2017)

〈그림 1〉 글로벌 금융규제 증가 추이



자료: Boston Consulting Group

빈번한 금융규제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금융회사에 큰 리스크 요소가 된다. 금융규제의 변경횟수가 많아지게 되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와 내부통제에 그만큼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을 배정해야 한다. 그런데 규제증가는 규제간의 상호연관성과 복잡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아 금융회사의 규제불이행 위험을 높이게 되며, 이는 결국 규제위반으로 인한 벌금부과 위험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BCG의 추정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6년의 기간동안 미국과 유럽의 규제불이행 은행들에 부과된 벌금의 규모는 무려 3,21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미국과 유럽의 규제불이행 은행에 대한 벌금부과 추이

(단위: 억달러)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벌금액	220	80	230	520	720	770	250	420

자료: Boston Consulting Group

규제불이행에 따른 벌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금융회사들은 규제준수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더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흐름이 일반화되고 금융회사들간의 거래도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규제도 글로벌 시각에서 설계되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들의 규제준수 업무의 범위가 글로벌 규제환경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적정 수준의 규제준수 및 내부통제를 위해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하거나 더 강력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금융회사들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소이다. 엑센츄어(Accenture)는 금융회사들이 규제준수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순이익의 5% 수준을 넘어섰으며, 향후 2년간 관련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다.⁴⁾

4) Accenture(2017)

복잡성과 상호연관성이 높아지는 금융규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해외 금융회사들의 규제준수 및 내부통제 강화전략은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자동화된 시스템인 RegTech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방향은 국내 금융회사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국과 유럽에서의 금융규제 변화는 국내 금융규제 체계와 금융회사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내 금융회사들의 규제준수 및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금융투자회사에게 그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금융시장 규제가 은행보다는 자본시장의 영역에서 더 복잡한 양상을 가지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에서는 끊임없이 신상품이 개발되고 새로운 방식의 자금거래가 일어난다. 따라서 시장규제의 변화도 자본시장에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금융규제준수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역에서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엄청난 빈도수의 금융거래와 거래관계의 복잡성이 높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특성을 감안할 때 규제준수와 관련된 위험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장기적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RegTech의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해외의 RegTech 활용 사례와 시사점

해외에서는 규제·감독당국이 RegTech의 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RegTech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RegTech 기업이 제공하는 솔루션을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해외의 금융감독기관들은 감독업무를 효율화함과 동시에 금융회사들의 규제준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RegTech의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의 FCA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 RegTech이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정보공유의 효율화,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간의 양방향 소통 확대, 데이터 단순화를 통한 의사결정과정 개선 및 자동화 지원 등에 대하여 RegTech의 적용을 제안하였고, 영국의 금융회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의 목적을 명확히 해석하고 규제관련 표준들을 구체화하였다.

미국에서는 대형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RegTech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데, 규제준수업무의 효율화, 내부통제의 강화, 보고절차의 단순화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RegTech 도입에 적극적인 금융회사로는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등이 있는데, RegTech기업에 투자하거나 이미 개발된 솔루션을 활용하여 규제준수 및 이상행위 감시업무를 자동화하고 있다. Goldman Sachs는 Wells Fargo, DRW Trading, Pivot Investment Partners와 공동으로 RegTech 신생업체였던 Droit에 대규모 투자(1,600만 달러)를 단행하였고 개발된 ADEPT 플랫폼을 이용하여 규제준수와 내부통제 업무를 자동화하였다.⁵⁾ 개발된 플랫폼은 미국내의 대표적인 금융규제인 Dodd-Frank 법안뿐만 아니라

5) Droit의 ADEPT 플랫폼은 Goldman Sachs 이외에도 BNP Paribas, Credit Agricole CIB, Lloyds, UBS 등의 글로벌 금융회사

라 유럽의 MiFID II/MiFIR에 대해서도 적절히 규제준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Morgan Stanley의 경우 IBM이 개발한 인공지능 플랫폼인 Watson을 활용하여 복잡해지는 규제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Watson 플랫폼은 자연어를 인식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지리적 기준, 시기, 영업단위, 상품 등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금융규제를 구분하여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맞춤형 RegTech 솔루션을 제공한다. Watson 플랫폼은 내부 트레이더의 이상거래행위나 자금세탁의 가능성을 내포한 의심거래를 찾아내는 솔루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해외의 RegTech 활용사례를 살펴보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RegTech의 도입과 활용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규제강화 과정에서 대형 금융회사들이 엄청난 수준의 벌금을 내게 되었고, 추가적인 벌금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준수와 내부통제 강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규제준수 강화를 위해 지출해야하는 비용도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다. 이에 효율성은 높이면서도 비용은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핀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규제준수 업무를 자동화하고 대규모 데이터 처리 및 보고관련 정보분석으로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해외의 금융회사들이 RegTech의 도입 및 활용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규제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금융회사의 경쟁력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우리 금융회사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RegTech 활용사례들을 잘 관찰하여 우리 금융회사들도 글로벌 규제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내 도입 확대시 고려사항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회사의 RegTech 도입 및 활용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2월에 새로운 금융인프라 도입시 금융회사가 필요한 내부통제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RegTech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지만⁶⁾ 아직까지 국내 금융회사들의 관심도는 낮은 편이며, 특히 금융투자회사의 RegTech 도입은 미미한 수준이다. 해외의 금융규제가 꾸준히 세밀해지면서 국내 금융규제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과 우리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RegTech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규제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이제 매우 현실적인 이슈이다. 은행권에 비해 금융투자회사들은 상대적으로 RegTech 도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함을 인식하고 경쟁력강화의 일환으로 RegTech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금융투자회사는 규모에 따라 RegTech의 도입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대형사의 경우 인하우스(In-house) 방식의 RegTech의 도입이 추진될 수 있지만, 중소형사의 경우 개발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대

들도 사용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금융감독원(2017)

적으로 크기 때문에 아웃소싱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선택보다 더욱 중요한 점은 RegTech 솔루션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참가자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RegTech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과 금융회사 사이의 적극적인 양방향 소통이 필요하다.⁷⁾ 감독당국과 금융회사간 금융규제에 대한 인식격차가 최소화되어야 규제준수 리스크가 최소화되기 때문이다.

협업체계의 구축에 있어서 정보공유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효율적인 RegTech 시스템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감독당국, 금융회사, RegTech 기업간에 금융거래나 고객에 대한 정보공유가 불가피하다.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데이터 구성과 호환방식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자료 저장, 공유, 처리 및 조회 등을 위한 데이터, 프로토콜 및 공개용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등에 대해 표준화 방안을 마련할 경우 RegTech 솔루션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운영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⁸⁾

정보공유와 관련하여 정보보호에 관련된 법규와의 충돌가능성도 사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개인정보유출사고로 인하여 정보보호에 관련된 법규들은 개인정보 공유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RegTech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공유의 범위가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들과 상충관계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전적으로 상충관계의 최소화를 위해 정보공유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되, 필요하다면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관련 법규의 개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7) 조창훈(2017)

8) 금융보안원(2017)



참고문헌

금융감독원, 2017,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보도자료)

금융보안원, 2017, 금융규제 이행을 위한 RegTech의 필요성 및 향후과제

조창훈, 2017, 국내 레그테크의 시장성 검토 및 도입시 고려사항, 전자금융과 금융보안(제8호, 2017-04)

Accenture, 2017, Compliance: Dare to be different, 2017 Compliance Risk Study.

Boston Consulting Group, 2017, Staying the course in banking, Global Risk 2017.

Financial Conduct Authority, 2015, Call for input: Supporting the development and adoption of RegTech.

Financial Conduct Authority, 2016, Call for input on supporting the development and adopters of RegTech, FS16/4.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2016, RegTech in financial services: Technology solutions for compliance and reporting.